

#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

## 주요 개정 사항 및 신·구 대비표

### □ 주요 개정 사항

| 영역   | 구분   | 2019학년도  | 2020학년도  |  |  |          |
|--|--|--|--|--|--|----------|
| 공통   | 지급 시기  | 변경   | - 지급 시기<br>· 1차(선급금): 8월   |  |  |          |
|  | 지급 방법  | 신설   | - 지급 방법<br>· 비대면 학생지도 실적 인정  |  |  |          |
| 연구   | 기본 연구 활동 지원비   | 변경   | - 지원 기준<br>· 연구 성과물 미제출로 인한 기 지급 비용 미반납 시 모든 교내 연구 비용(신진·중견·연구년 등) 지급 제한<br>·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·직원의 연구 성과물 미제출 또는 기 지급 비용 미반납 시 관련 행정 사항 유보 및 추후 환수 조치 |  |  |          |
|  |  |  | - 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<br>· 연구 성과물 미제출로 인한 기 지급 비용 반납 동의서 제출 의무화  |  |  |          |
|  | - 차등 지급 기준<br>· ‘가’ 지급 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- 학술 서적: 국내·외 학술 저·역서 및 기타 학술 저·역서(3인 이하 저서)</td> </tr> <tr> <td>· 미술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7항의 해당 실적 3건</td> </tr> <tr> <td>· 음악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6·7항의 해당 실적 3건</td> </tr> <tr> <td>· ‘나’ 지급</td> </tr> </table> | - 학술 서적: 국내·외 학술 저·역서 및 기타 학술 저·역서(3인 이하 저서)   | · 미술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7항의 해당 실적 3건 | · 음악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6·7항의 해당 실적 3건 | · ‘나’ 지급 |
|  | - 학술 서적: 국내·외 학술 저·역서 및 기타 학술 저·역서(3인 이하 저서)   |  |  |  |  |          |
| · 미술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7항의 해당 실적 3건   |  |  |  |  |  |          |
| · 음악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6·7항의 해당 실적 3건 |  |  |  |  |  |          |
| · ‘나’ 지급   |  |  |  |  |  |          |
| - 학술 서적: 기타 학술 서적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· 미술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7항의 해당 실적 2건</td> </tr> <tr> <td>· 음악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6·7항의 해당 실적 2건</td> </tr> </table> | · 미술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7항의 해당 실적 2건   | · 음악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6·7항의 해당 실적 2건   |  |  |          |
| · 미술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7항의 해당 실적 2건   |  |  |  |  |  |          |
| · 음악 분야: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·3·4·5·6·7항의 해당 실적 2건 |  |  |  |  |  |          |
| 연구년 지원 사업  | 변경   | - 신청 자격<br>· 연구년 유형 분류를 통한 신청 자격 기준 구체화<br>- 신청 제한<br>· 일반징계 정직: 정직 기간 동안 제한   |  |  |  |          |
| 신진 및 중견 연구 지원 사업   | 신설   | - 분야별·계열별 지원 금액<br>· 중견연구에 해외공동연구 신설   |  |  |  |          |
|  | 변경   | - 신청 제한<br>· 일반징계 정직: 정직 기간 동안 제한  |  |  |  |          |

## □ 신 · 구 대비표

| 2019학년도<br>교육 ·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  | 2020학년도<br>교육 ·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|--|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|--|
| <p><b>III</b> 지급방법 및 절차</p> <p>□ 지급 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차(선급금): 6월</li> </ul> <p>□ 지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,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</li> <li>○ 영역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 후 40% 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</li> <li>○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</li> </ul>   | <p><b>III</b> 지급방법 및 절차</p> <p>□ 지급 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차(선급금): <b>8월</b></li> </ul> <p>□ 지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,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</li> <li>○ 영역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 후 40% 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</li> <li>○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</li> <li>○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<b>비대면 학생지도 실적 인정</b></li> </ul>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| <p>[별첨1]</p> <p>3. 연구영역 지원사업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항 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내 용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</td> <td>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| 항 목  | 내 용 | 비 고 |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|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|  | <p>[별첨1]</p> <p>3. 연구영역 지원사업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항 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내 용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</td> <td>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<b>반납동의서</b>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항 목 | 내 용 | 비 고 |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|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<b>반납동의서</b>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|  |
| 항 목  | 내 용  | 비 고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|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 |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| 항 목  | 내 용  | 비 고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|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 |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<b>반납동의서</b>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| <p>4.1. 기본연구활동지원비</p> <p>가. 지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년도 연구성과 미제출로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은 당해연도 비용 지급을 유보하며, 반납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.</li> </ul> <p>나. 지급 시기 및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년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차지급: 기본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자에 한해 당해연도 6월(9월 임용자는 10월)에 기준비용의 40%를 지급한다.</li> </ul> </li> <li>- 지급예외 및 환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구활동기간 동안 달성성도가 없는 경우 지급 받은 비용 전체를 환수한다.</li> <li>· 지급 대상자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.</li> <li>· 징계와 직위해제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월할 산정하여 지급 하되,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</li> </ul> </li> </ul> | <p>4.1. 기본연구활동지원비</p> <p>가. 지원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년도 연구성과 미제출로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은 당해연도 비용 지급 <b>및 모든 교내 연구비 지급을 제한하며</b>, 반납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.</li> <li>-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직원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기 지급금액 미 반납 시 퇴직 또는 전출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한다.</li> </ul> <p>나. 지급 시기 및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년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차지급: 기본연구활동계획서와 <b>반납동의서</b>를 제출한 자 중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자에 한해 당해연도 <b>8월</b>(9월 임용자는 10월)에 기준 비용의 40%를 지급한다.</li> </ul> </li> <li>- 지급예외 및 환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구활동기간 동안 달성성도가 없는 경우 지급 받은 비용 전체를 환수한다.</li> <li>· 지급 대상자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.</li> <li>· 징계와 직위해제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월할 산정하여 지급 하되,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|   |  |

**2019학년도**  
**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**

인정한다.

다.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,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

**자. 차등지급 기준**

| 지급 구분 | 기준업적  |
|-------|---|
| 가 지급  | 다음 성과 중 <b>하나</b> 를 달성한 자<br>- 국내논문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br>- 국제논문: SCI(E), SSCI, A&HCI, SCOPUS 등재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br>- 도서: <b>국내외 저역서(3인 이하 저자)</b><br><br>- 특허등록: 국내외 특허 대표 발명<br>- 예체능실적<br>• 미술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, 또는 2, 3, 4, 5, 6, 8항의 해당실적 3건<br>• 음악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, 또는 2, 3, 4, 5, 6항의 해당 실적 3건<br>- 법조실무실적: 교육용사건기록 2건 |
| 나 지급  | 다음 성과 중 <b>하나</b> 를 달성한 자<br>- 기타 국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<br>- (학술서적 기준 없음)<br>- 예체능실적<br>• 미술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2, 3, 4, 5, 6, 8항의 해당실적 2건<br>• 음악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2, 3, 4, 5, 6항의 해당실적 2건<br>- 법조실무실적: 교육용사건기록 1건  |
| 감액 기준 | - CAPD상 학생상담실적 연 10회 미달성: 400만원 감액<br>(상담내용은 50자이상 작성하되, 연구년·과건·휴직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은 해당기간 만큼 제외)  |

\*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까지 인정

**2020학년도**  
**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**

인정한다.

· 회수 기간 및 방법

| 항목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회수 기간 | 기 지급받은 기본연구활동지원비용을 전액 반납할 때까지 |  |
| 회수 방법 | 재직 교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급여공제(원천징수) 원칙<br>• 매월 100만원*씩 급여에서 공제<br>• 본인이 원하는 경우, 급여공제(원천징수) 처리 전에 현금일시납으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할 수 있고, 급여공제(원천징수) 도중 잔액에 대하여 완납할 수 있음 |
|       | 퇴직 교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퇴직교원은 현금일시납으로 퇴직 전까지 기 지급 비용 전액 반납   |

\* 단, 기타 부득이한 사정(공제금액 과다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'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(월 150만원)'보다 작은 경우)으로 월 100만원을 공제하지 못할 경우 공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조정에 따른 회수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

다. 기본연구활동계획서, **반납동의서**, 중간보고서(1차년도보고서) 및 2차년도계획서,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

- 반납동의서(서식 11)

· 연구 결과물 미제출 시 급여 공제를 통한 반납을 동의하는 반납동의서를 기본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.

**자. 차등지급 기준**

| 지급 구분 | 기준업적   |
|-------|--|
| 가 지급  | 다음 성과 중 <b>하나</b> 를 달성한 자<br>- 국내논문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br>- 국제논문: SCI(E), SSCI, A&HCI, SCOPUS 등재 학술지 <b>주저자</b> 논문<br>- <b>학술서적: 국내외 학술 저·역서 및 기타 학술저·역서(3인 이하 저서)</b><br>- 특허등록: 국내외 특허 대표 발명<br>- 예체능실적<br>• 미술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, 또는 2, 3, 4, 5, 7 항의 해당 실적 3건<br>• 음악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, 또는 2, 3, 4, 5, 6, 7항의 해당실적 3건<br>- 법조실무실적: 교육용사건기록 2건 |
| 나 지급  | 다음 성과 중 <b>하나</b> 를 달성한 자<br>- 기타 국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<br>- <b>기타 학술서적</b><br>- 예체능실적<br>• 미술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2, 3, 4, 5, 7항의 해당실적 2건<br>• 음악분야: 교수업적평가항목 2, 3, 4, 5, 6, 7항의 해당실적 2건<br>- 법조실무실적: 교육용사건기록 1건   |
| 감액 기준 | - CAPD상 학생상담실적 연 10회 미달성: 400만원 감액<br>(상담내용은 50자이상 작성하되, 연구년·과건·휴직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은 해당기간 만큼 제외)   |

\*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까지 인정

**\*\*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학생상담은 제한적으로 인정**

| 2019학년도<br>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| 2020학년도<br>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4.2. 교내연구지원사업

4.2.1. 연구년 지원사업

다. 신청자격

-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(정년 3년 이내의 교원 중 연구비가 없는 연구년을 신청할 경우 최근 3년 동안) 학술논문[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]과 학술서적(번역서 이상)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하여 160점 이상인 자. 다만, 예·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(필수)을 포함하여 연구실적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(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)
- ② 연구기간 6개월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현재 재직 잔여연수가 2.5년 이상인 자
- ③ 연구기간 1년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현재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
- ④ 연구년 수혜 후 재신청의 경우 연구개시일 기준 6개월 신청자는 연구년 종료 후 재직기간이 3년 이상, 1년 신청자는 연구년 종료 후 재직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한 자

라. 신청제한

- ⑩ 징계적용기준: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, 연구 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일반징계: 견책, 감봉-2년, 정직-3년/ 연구윤리: 주의, 경고-1년, 견책 이상-3년)

4.2. 교내연구지원사업

4.2.2. 우수논문장려금 지원 사업

나. 지원 금액

| 지급 구분                    | 학술논문 분류   | 현행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주저자    | 공저자 |
| 우수학술논문                   | • Cell, Nature, Science 게재 논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 | 6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Cell, Nature, Science 자매지 게재 논문 (인용지수 20 이상 학술지에 한 함) | 7,000  | 600 |
| SCIE, SSCI, A&HCI 저널 JCR | • JCR 1% 이내 논문  | 5,000  | 6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JCR 10% 이내 논문   | 4,000  | 6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JCR 25% 이내 논문   | 2,000  | 600 |

4.2. 교내연구지원사업

4.2.1. 연구년 지원사업

다. 신청자격

1) 연구년 유형 I(연구비 지원)

-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\*하고,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 및 국내 또는 국제 학술저·역서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하여 160점 이상인 자. 다만, 예·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을 포함하여 연구실적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(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)
- ② 6개월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2.5년 이상, 1년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

2) 연구년 유형 II(연구비 미지원)

-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\*하고,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이상 및 국내 또는 국제 학술저·역서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 100점 이상인 자, 다만 예·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0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 이상인 자. (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)
- ② 연구비 없는 연구년의 경우 재직 잔여 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.

라. 신청제한

- ⑩ 징계적용기준: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, 연구 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 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일반징계: 정직-정직 기간 동안 제한/ 연구윤리: 주의, 경고-1년, 견책 이상-3년)

4.2. 교내연구지원사업

4.2.2. 우수논문장려금 지원 사업

나. 지원 금액

| 지급 구분                | 학술논문 분류   | 현행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| 주저자    | 공저자 |
| 우수학술논문               | • Cell, Nature, Science 게재 논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 | 600 |
|                      | • Cell, Nature, Science 자매지 게재 논문 (인용지수 20 이상 학술지에 한 함) | 7,000  | 600 |
| SCIE, SSCI, A&HCI 저널 | • JCR 1% 이내 논문  | 5,000  | 600 |
|                      | • JCR 10% 이내 논문   | 4,000  | 300 |

| 2019학년도<br>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JCR 50% 이내 논문<br>• JCR 100% 이내 논문                     | 1,500<br>1,000 | 600<br>600 |
| 첫 번째<br>계재 논문                    | • JCR 100% 이내<br>첫 번째 논문<br>• 한국연구재단등재<br>(후보)지 첫 번째 논문 | 3,000          | -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,000          | -          |
| 한국연구재단<br>등재(후보)지                | • 연구비지원 표기 없는<br>등재(후보) 논문<br>•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<br>등재후보 논문  | 800            | 20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600            | 200        |

| 2020학년도<br>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JCR %순위 <sup>1)</sup>            | • JCR 25% 이내 논문<br>• JCR 50% 이내 논문<br>• JCR 100% 이내 논문  | 2,000<br>1,500<br>1,000    | 300<br>300<br>300 |
| 첫 번째<br>논문 <sup>2)</sup>         | • JCR 100% 이내 첫<br>번째 논문<br>• 한국연구재단등재<br>(후보)지 첫 번째<br>논문 <sup>3)</sup><br>• SCOPUS저널 첫 번째<br>논문 <sup>4)</sup> | 3,000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,000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
| 한국연구재단<br>등재(후보)지 <sup>5)</sup>  | • 한국연구재단<br>등재(후보)지 논문  | 800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SCOPUS<br>저널 <sup>6)</sup> | • SCOPUS 저널 논문    |

- 1) JCR 기준은 권, 호, 페이지가 명시된 학술논문 인쇄본 발행일자 당시 기준으로 적용함
- 1) JCR 적용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낮은 %값을 가진 학문분야를 우선 적용함
- 1) JCR 학문분야별 저널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JCR 1%를 적용하지 않으며 학문분야 저널수가 50~99개인 경우 최상위 저널을 JCR 1% 기준으로 지급함
- 2) 첫 번째 논문이란 지원대상 기간 중에 첫 번째로 신청한 논문(주저자급)을 의미함
- 2) JCR 100% 이내 첫 번째 논문 장려금은 200만원,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 첫 번째 논문 장려금은 150만원을 선 지급하고, 나머지 장려금은 추후 예산 부족 시 지급하지 않음
- 3), 4), 5), 6)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만 적용됨

#### 4.2.3. 신진 및 중견연구지원사업

나. 분야별/계열별 지원 금액(신진연구, 공동연구, 일반연구, 기초 및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)

| 구분<br>분야별 | 계열별 지원 연구비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인문/사회                | 예체능      | 자연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신진연구      | 1년 과제                | 1년차     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<br>(장비) |
|           | 2년 과제                | 1년차     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<br>(장비) |
| 중견연구      | 공동연구                 | 캠퍼스간    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 | 15,000천원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학제간      | 15,000천원 | 15,000천원 | 15,000천원         |
|           | 일반연구                 | 6,000천원  | 6,000천원  | 10,000천원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기초 및<br>보호학문<br>(공동) | 1년차     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    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        |
| 3년차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                 |

#### 라. 신청 제한

##### ① 연구책임자

㉞ 연구개시일 현재 외부 연구과제(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고형 과제에 한하며 용역 및 위탁 과제 제외)를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의 경우 2개 과제, 자연(기초, 응용)계열의 경우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혹은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이 8,000

#### 4.2.3. 신진 및 중견연구지원사업

나. 분야별/계열별 지원 금액(신진연구, 공동연구, 일반연구, 기초 및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)

| 구분<br>분야별 | 계열별 지원 연구비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| 인문/사회                | 예체능   | 자연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신진연구  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| 10,000천원 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 |          |
|           | 2년차                  | 6,000천원   | 6,000천원  | 10,000천원 |          |
| 중견연구      | 공동연구                 | 캠퍼스간  | 10,000천원 | 10,000천원 | 15,000천원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학제간   | 15,000천원 | 15,000천원 | 15,000천원 |
|           | 일반연구                 | 6,000천원   | 6,000천원  | 10,000천원 |          |
|           | 기초 및<br>보호학문<br>(공동) | 1년차  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 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
| 3년차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40,000천원  | 40,000천원 | 40,000천원 |          |
| 해외공동연구    | 10,000천원<br>(계열공통)   | -연구비 \$5,000이상 매칭<br>필수<br>-기타 중견 연구 사업<br>(해외공동연구 제외)과<br>중복 신청 가능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
#### 라. 신청 제한

##### ① 연구책임자

㉞ 연구개시일 현재 외부 연구과제(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고형 과제에 한하며 용역 및 위탁 과제 제외)를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의 경우 2개 과제, 자연(기초, 응용)계열의 경우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혹은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이 8,000

**2019학년도  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**

만원을 초과한 자(다만, 신진연구는 적용 제외)

- ㉔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아 처분일로부터 신청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(일반징계: 견책, 감봉-2년, 정직-3년/ 연구 윤리: 주의, 경고-1년, 견책 이상-3년)

**2020학년도  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**

만원을 초과한 자(다만, 신진연구 및 **해외공동 연구 적용 제외**)

- ㉔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아 처분일로부터 신청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(**일반징계: 정직-정직 기간 동안 제한**/ 연구 윤리: 주의, 경고-1년, 견책 이상-3년)

**<서식 10>**

**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**

| 지표명              | 증빙방법   | 평가배점  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학생 상담            | 학생의 학사/진로/취업/창업 내용에 대한 개인 상담 실적<br>[전산시스템 입력, 결과보고서]   | 건당 3점<br>(학생 1인당<br>연간 5회<br>이내)                 |
| 학생 멘토링           | 신입생·재학생·외국인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<br>[운영계획서, 전산시스템 입력, 결과 보고서]  | 건당 5점<br>(1회당 2명<br>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생 안전 교육·지도      | 학생 안전 교육·지도 활동 실적<br>- 교육시설물 안전교육·사고 방지 활동 실적<br>- 대형행사 안전교육·지도 활동 실적<br>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소방교육, 응급처치 교육 등<br>[실시기관 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 보고서, 결과보고서] | 1시간당 5점<br>(1일 최대<br>20점/<br>연간 150점<br>상한)      |
| 학생 입장 지도         | 학생의 행사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<br>[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]   | 1시간당 5점<br>(1일 최대<br>20점)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장(교육) 실습 지도     |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[실시기관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]   |  |
| 팀 코칭제            | 개인 또는 집단(부서/단체) 단위로 팀(그룹) 또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학사지도,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 실적<br>[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 보고서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팀당 최대<br>100점<br>(연간 기준<br>최소 5회<br>이상 참여<br>시) |
| 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) 지도 | 학생들의 공모전 또는 취업대상자(미취업 졸업자 포함)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<br>[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 보고서]  | 50점/추가<br>참여 시<br>회당 10점씩<br>부분점수<br>인정)         |
| 최소 기준            | 학생지도 영역에서 최소 30점 이상 취득 시부터 지급 (학생지도 실적 1점당 20,000원)<br>* 최종 실적이 30점이 안되는 경우, 지급받은 선급금 환수 조치(30점 이상이나 선급금보다 최종 실적이 적은 경우, 차액 환수 조치)           |  |
| 증빙자료 필수 사항       | * 상담·멘토링 전산시스템 입력: 100자 이상<br>* 안전교육·안전지도·입장지도·현장(교육)실습지도 결과보고서: 활동시간, 활동내용, 활동사진 첨부<br>* 팀코칭제, 학생 공모전/취업 지도 회차별 활동 보고서: 활동 시간, 활동 내용        |  |
| 지표별 세부 기준        | 각 지표별 인정기준, 운영방법, 활용서식 등은 「2019학년도 교직원 학생지도 활동 업무 처리기준」에 의함  |  |

※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인정 및 비용 지급

**<서식 10>**

**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**

| 지표명              | 증빙방법  | 평가배점 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학생 상담            | 학생의 학사/진로/취업/창업 내용에 대한 개인 상담 실적<br>[전산시스템 입력, 결과보고서, <b>비대면 실적자료</b> ]  | 건당 3점<br>(학생 1인당<br>연간 5회<br>이내)                 |
| 학생 멘토링           | 신입생·재학생·외국인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<br>[운영계획서, 전산시스템 입력, 결과 보고서, <b>비대면 실적자료</b> ]   | 건당 5점<br>(1회당 2명<br>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생 안전 교육·지도      | 학생 안전 교육·지도 활동 실적<br>- 교육시설물 안전교육·사고 방지 활동 실적<br>- 대형행사 안전교육·지도 활동 실적<br>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소방교육, 응급처치 교육 등<br>[실시기관 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]   | 1시간당 5점<br>(1일 최대<br>20점/<br>연간 150점<br>상한)      |
| 학생 입장 지도         | 학생의 행사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<br>[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]  | 1시간당 5점<br>(1일 최대<br>20점)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장(교육) 실습 지도     |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[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]   |  |
| 팀 코칭제            | 개인 또는 집단(부서/단체) 단위로 팀(그룹) 또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학사지도,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 실적<br>[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 보고서, <b>비대면 실적자료</b> ]   | 1팀당 최대<br>100점<br>(연간 기준<br>최소 5회<br>이상 참여<br>시) |
| 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) 지도 | 학생들의 공모전 또는 취업대상자(미취업 졸업자 포함)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<br>[운영계획서, 회차별 활동보고서, 결과 보고서, <b>비대면 실적자료</b> ]   | 50점/추가<br>참여 시<br>회당 10점씩<br>부분점수<br>인정)         |
| 최소 기준            | 학생지도 영역에서 최소 30점 이상 취득 시부터 지급 (학생지도 실적 1점당 20,000원)<br>* 최종 실적이 30점이 안되는 경우, 지급받은 선급금 환수 조치(30점 이상이나 선급금보다 최종 실적이 적은 경우, 차액 환수 조치)  |  |
| 증빙자료 필수 사항       | * 상담·멘토링 전산시스템 입력: 100자 이상<br>* 안전교육·안전지도·입장지도·현장(교육)실습지도 결과보고서: 활동시간, 활동내용, 활동사진 첨부<br>* 팀코칭제, 학생 공모전/취업 지도 회차별 활동 보고서: 활동 시간, 활동 내용<br>* <b>학생 상담, 학생 멘토링, 팀코칭제, 학생 공모전/취업(창업지도) 비대면 실적자료: 화상회의 프로그램(팀즈, MEET, ZOOM 등)을 활용하여 진행한 활동의 캡처화면 등</b> |  |
| 지표별 세부 기준        | 각 지표별 인정기준, 운영방법, 활용서식 등은 「2020학년도 교직원 학생지도 활동 업무 처리기준」에 의함   |  |

※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인정 및 비용 지급, **비대면 학생지도 진행시**

**에만 비대면 실적자료 추가 제출**

**2019학년도**  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

**2020학년도**  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

<서식 11>  
<기본연구활동지원비 반납 동의서>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연구자  | 소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학    |     |
| 사 번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과(부) | (인) |
| 연구<br>기간   | 20 . . . . ~ 20 . . . . (최대 2년) |       |     |
| 반납<br>방법   | 급여공제: 월 100만원씩 연구비전액 반납 시까지     |       |     |
| <p>상기 본인은 2020학년도 전남대학교 교직원 『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』에 의거 최종 연구성과물을 연구기간 안에 미제출할 경우 기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>전남대학교총장 귀하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